
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(한병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93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1.

발 의 자 : 한병도 · 윤건영 · 강득구
양부남 · 박정현 · 이광희
진선미 · 장철민 · 김교홍
신영대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직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성이 높은 기관·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하여 그 임원의 재산을 등록 및 공개하도록 하는 등 규범을 적용하고 있음.

그런데 시행령에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·단체의 경우 예산 규모를 공직유관단체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, 위탁 업무의 비중이 낮더라도 예산이 큰 경우에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위탁·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 비중을 공직유관단체 기준에 명시하여 공직유관단체 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3조의2제1항제3호).

법률 제 호
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재정지원 규모”를 “재정지원 규모, 위탁·대행업무 비중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“대행하는 기관·단체”를 각각 “대행하는 기관·단체 중 위탁·대행 업무의 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·단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의2(공직유관단체) ① 제9조 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 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<u>재정지원 규모</u> ,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·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.	제3조의2(공직유관단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재정지원 규모, 위탁·대행업무 비중</u> ,----- ----- ----- -----.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3. 정부의 출자·출연·보조를 받는 기관·단체(재출자·재출연을 포함한다),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<u>대행하는 기관·단체</u>	3. ----- ----- ----- ----- <u>대행하는 기관·단체 중 위탁·대행 업무의 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·단체</u>
4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·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·보조를 받는 기관·단체(재출자·재출연을 포함한다),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	4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받아 수행하거나 <u>대행하는 기 관 · 단체</u>	-----<u>대행하는 기관 · 단체</u> <u>중 위탁 · 대행 업무의 수입액</u> <u>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</u> <u>과하는 기관 · 단체</u>
5. (생 략)	5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